

제 포항-

# 발전사업허가증

상 호	이			
대 표 자		연 락 처		
		법 인 번 호		
사 업 내 용	태양광발전사업			
사 업 장 소	경상북도 포항시	토 지		
		건 물	○	
사 업 규 모	원동력의 종류	태양광	설 비 용 량	429.59kW
	공 급 전 압	380V	주 파 수	60Hz
사업준비기간	2024. 1. 10. ~ 2025. 7. 9.			
허 가 조 건	세부허가조건 이행			
기 타	설치면적 1973.948㎡			

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.

2024년 1월 10일

포 항 시





# 포항시 남구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허가 알림-(태양광발전시설-이 [redacted])

1.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시 [redacted] 상 공작물설치 목적의 허가신청 건에 대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(개발행위허가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

가. 허가내용 (허가-2024-008. 009)

위치	지목	용도지역	허가면적 (㎡)	목적	신청인		기타
					주소	성명	
[redacted]	주차장	2종 일반 주거	6.240	공작물 설치	[redacted]	[redacted]	

나. 제세공과금 : 면허세 금9,000원 (남구 세무과)

※ 허가일로부터 1년간 미 착공 시 허가 취소, 준공기한 내 미준공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, 2년 내 미 준공 시 원상복구

3.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, 허가조건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,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개발행위 허가증 1부.  
2. 개발행위 허가조건 1부. 끝.

## 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		계약번호			
발전 사업자	고객명	이		발전소명	이	
	대인번호			전화번호		
	주소	지번	경상북도 포항시		상업운전희망일	
		도로명	경상북도 포항시		2024-03-29	

발전원	01 태양광	계약전력	398
공급방식	738 삼상4선(220/380V)	공급전압	380V
설치장소	경상북도 포항시		
설비용량	397.5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진)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적용약관(규정)	개별전력수급계약(PPA)
전력거래형태	한전거래		
사용전 점검기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공급설비 공사업체	
시설부담금	1 표준시설부담금		공공Q ), 지중( )
설비관리자명		연락전화	
SMS 수신번호			

**※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**

-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.
-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
  -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  -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,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
  -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
- ※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,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.
  -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
  -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  -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%를 초과하였으나,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  -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-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3월 11일

대구본부 포항지사장



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



# 사용전검사 확인증

발행번호 제 [ ] 호

고객번호 : [ ]

신청인	대표자 성명	[ ]	전화번호	[ ]	
	회사명 또는 상호	이 [ ] 주식회사			
	주소	경상북도 포항시 [ ]			
검사결과	검사전기설비	상용 발전설비 (태양광) 380(V) 396.16(kW)			
	검사연월일	2024-07-09			
	검사자	소속	경북동부지사	성명	[ ]
	판정	합격	다음검사	2028-07-09	
임시사용	허용사유 :	KESCO			
	사용기간 :				
	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:				
기타 :	<p>1. 외관상 모듈의 파손이나 지지대의 균열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접속함 및 분전함 내 발열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 금회 검사대상 이외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 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
<p>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.</p>					
		2024 년 07 월 09 일			
		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			
검사신청인	[ ]	귀하			



## 태양광발전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

양도인 ( ) (이하 "갑")와 양수인 ( ) (이하 "을") 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포괄적 양도양수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조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발전소명	허가번호	설치장소	용량
태양광발전소		경상북도 포항시	398.16kw

- "갑"은 상기에 표기된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의 권리와 의무 및 일체의 사업 권 을 "을" 에게 양도한다.
- "갑"의 소유권 이전 범위는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증, 전력거래계약서(SMP), REC소유권이전,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제반 사항을 이전 하는 것으로 한다.
  - ① 임대차 관련 일체란 임대료 및 수수료 지급, 등 "갑"(임차인)이 임대인( ) 에게 실행하기로 한 모든 제반 사항이 이에 속한다.
3. 발전소 매입금액 : 일금 사억원 정 (₩ 400,000,000)
  - 매입금액에는 임대료 선납비용이 포함된다.
4. SMP, REC 소유권 및 발전대금은 상업운전시작일 이후 양수자 "을"이 소유한다.
5. 위 계약서를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내용은 사회적 법규에 따른다.

2024. 7. 27.

"갑" (양도자)

"을" (양수자)

상 호 :

주 소 :

등록번호:

대 표 :